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

2014. 12

-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켈런,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켈런,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 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 건 복 지 부**  
**재정운용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법 제정예행안서

2014.12

보건복지부 재정위원회

# 목 차

## **I**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 1

1. 도입 배경 및 경과 ..... 1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 1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 2

## **II** 주요 질문모음(Q&A) ..... 5

### <별첨 1> 관련법률 ..... 12

1. 국민건강증진법 ..... 21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43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58

### <별첨 2> 관련서식 ..... 6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 6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 70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 71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 72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 73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 74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75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 1 도입 배경 및 경과

- 그동안 담배부담금 부과 징수는 담배제조자 및 담배수입업자의 반출량 신고에 의존하여 사후에 징수함으로써 체납액 발생 소지가 있고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06.9.27)하고 시행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07.2.8부터 시행

##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담배 종류에 부과하는 부담금 관련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최초로 반출되는 담배를 대상으로 담보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110/100~120/100이상의 담보액 증명서류를 첨부한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보건복지부장관)받아야 담배 반출 가능**

\* 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은담배 및 물담배는 '14.7.21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적용(궐련 및 전자담배는 기존대로 적용)

▶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내에서 통관 허용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 주관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제도·법령 T 044-202-2807)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부과·징수 T 044-202-2332)
- 대상업체 :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 대상물품 : 담배사업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담배
- 적용시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
- 관련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세관장

### 3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 ● 절차

①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제출(담보제공사실증명서류 첨부) ⇒ 납부담보확인서 발급(보건복지부장관) ⇒ ②통관지 세관장 제출(담배수입업자) ⇒ ③ 부담금 미납시 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 총당 후 환부

#### ①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제출 및 납부담보확인서 발급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의 별지 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별지 14호서식의 납부담보확인서 발급

#### ② 통관지 세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만 통관 허용

#### ③ 담보에 의한 부담금 총당

- 담보제공자가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 등에 총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환부 조치

● 담보종류 · 담보액 · 제공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3)

담보종류	담보액	담보제공방법
○ 금전(지급보증서 포함)	담보액의 100분의 110	· 법원 공탁 후 공탁수령증 제출 · 지급보증서 제출
○ 납부보증보험증권	상 동	· 보험증권 제출
○ 국채 및 지방채	담보액의 100분의 120	· 등록된 국채 · 지방채 · 사채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필증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상 동	·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
○ 토지	상 동	·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제출 ※ 저당권 설정등기 · 등록(복지부장관)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나 건설기계	상 동	·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제출 ※ 저당권 설정등기 · 등록(복지부장관)

● 담보액 산정기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 ①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 ②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

## Ⅱ 주요 질문모음(Q&A)

### 목 차

- (1) 납부담보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대상 담배 ..... 7
- (2) 담배 통관시 납부담보 제공 및 부담금 납부 절차 ..... 11
- (3) 수입 통관시 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발급 방법 ..... 13
- (4) 부담금 납부담보물 제공방법 및 절차 ..... 14
- (5) 기존에 제공한 담보물 반환 가능 여부 ..... 15
- (6) 납부고지된 부담금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 16
- (7) 부담금 내역서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17
- (8) 부담금, 가산금 미납시 제공한 담보 처분 절차 ..... 18
- (9)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오납금 ..... 19
- (10) 납부담보총액, 미납부산출금액, 납부보증신청액 ..... 20



# (1) 납부담보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대상 담배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납부담보 제공 및 부담금 납부 대상 담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궐련(cigarettes) : 20개비당 841원**
  - 개념 :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o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 개념 :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증기화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출처 : 전자담배 액상의 유해물질 분석 연구

---

● 파이프담배(pipes) : 1그램당 30.2원

- 개념 :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 엽궐련(Cigar) : 1그램당 85.8원

- 개념 :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 각련 : 1그램당 30.2원

- 개념 :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 1그램당 34.4원

- 개념 : 입(mouth), 뺨(cheek) 또는 입술(lip) 아래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무연 담배 제품.



출처 : Tobacco Atlas, 4th edition

● 냄새 맡는 담배(snuff) : 1그램당 21.4원

- 개념 :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출처 : Tobacco Atlas, 4th edition



출처 : Tobacco Atlas, 4th edition

● 물담배 (Water pipes) : 1그램당 1050.1원

- 개념 : 물담배 이외에 시샤(Shisha), 후카(Hookah) 등으로 불리며, 담뱃잎을 솥으로 태운 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 **머금은 담배(Snus) : 1그램당 534.5원**

- 개념 : 입안에 머금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습식 스너프 (Moist Snuff)의 일종으로 작은 갑이나 향낭 주머니에 담겨서 판매



출처 : Public health law center(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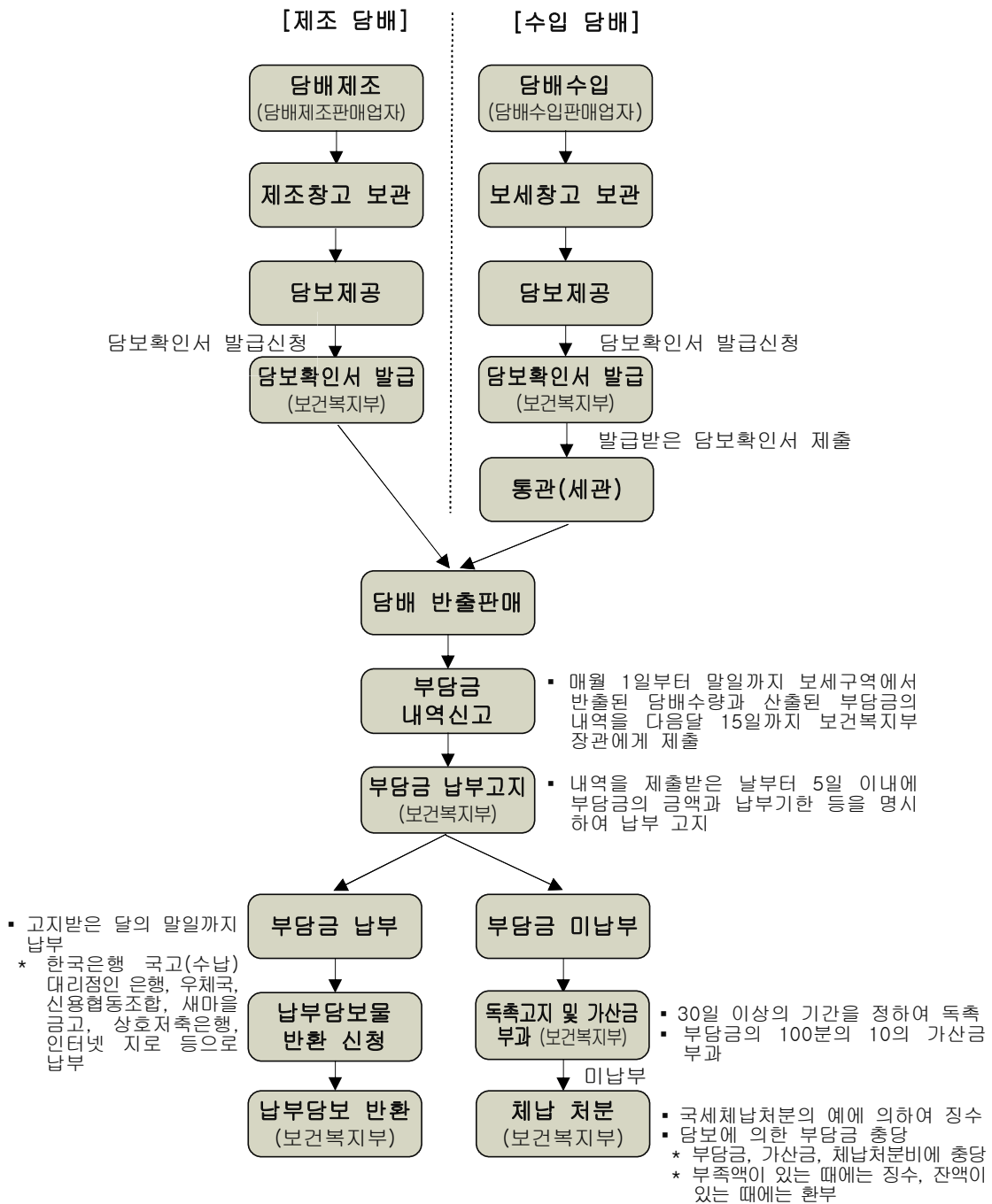
출처 : wikimedia

## (2) 담배 수입 통관시 납부담보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담배 수입 통관시 납부담보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판매업자는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
- 수입 판매업자는 보세창고에서 반출 예정 일자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담보확인신청서(담보제공사실 증명서류 첨부)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한 납부담보확인신청서 검토 후 해당업체에 납부담보확인서 발급
- 수입 판매업자는 발급받은 납부담보확인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
- 관할 세관에서는 수입 판매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수량만큼 반출 허용
- 수입 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수입담배 수량과 그에 따른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부담금 내역신고)
- ※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고지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 시기 등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 판매업자가 제출한 부담금 내역서를 토대로 해당업체에 부담금 납부고지(수입판매업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
- 수입 판매업체가 당월 고지된 부담금 납부 완료시 해당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존에 업체가 제공한 납부담보물 반환
- 수입 판매업체가 납부 고지된 부담금 미납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100분의 10의 가산금 부과) 정하여 해당 업체에 독촉고지
- 독촉고지를 받은 수입판매업체가 해당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업체에서 제공한 담보물을 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흐름도





### **[3] 수입 통관시 필요한 납부금납부담보확인서는 매번 발급 받아야 하나요?**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제에 의거하여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 반출시 매번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담보제공사실증명서류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세관)지에 제출하여야만 담배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에서는 반출예정일 3~4일 이전에 보건복지부로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내주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진실해 주무관 앞
  - 보다 빨리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등기 혹은 우편으로 위의 주소로 신청서를 발송하신 후에 작성하신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재정운용담당관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정운용담당관 fax 044-202-3918)

#### (4)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를 제공방법 및 절차?

- 수입물품을 통관(세관)지에서 반출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납부담보확인서를 해당 통관(세관)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판매업체는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10~120이상의 담보액 증명서류를 첨부한 납부담보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13호 서식) 및 납부담보제공신청서(61쪽 서식)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에는 다양한 담보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원공탁서, 은행지급보증서, 납부보증보험증권 중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 법원공탁서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공탁계에서 발급.  
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대표 인감, 주민등록증, 공탁 금액 등이 필요함.
  - 은행지급보증서 : 해당 업체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은행 문의 요망)
  - 납부보증보험증권 : 시중 보험증권사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증권사에 문의 요망)
- 담보종류 중에서 법원공탁서의 경우에는 지급 보증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증 기한이 있음(통상 1년, 일부 수수료 발생)

## (5) 담배업체에서 기존에 제공한 납부담보물은 반환이 가능한지?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였던 담보물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담보 반환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한 부담금 납부 고지서에 대한 납부확인증(영수증)을 함께 보건복지부로 등기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자료 검토 후 담보물을 반환해 드립니다.
  - 참고로 납부담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신 경우 담보물 반환 신청을 하시면 즉시 반환 받으실 수도 있고, 담보물 반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 물품 수입시에 담보물로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해당업체의 여건상 자금 여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납부담보 반환 신청보다는 기존에 제공한 담보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편이 편리합니다.

## [6] 납부 고지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 예외 없이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께서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물량을 부담금내역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고지 하고 있으므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께서는 부담금 납부 시기 등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 필요

- 고지서가 발급되고 납부기한 내에 미납이 되면 자동으로 가산금을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이 발생하면 예외 없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업체 부담금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 자료가 상이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 담배 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담배 물량에 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반출 물량과 다르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기별로 관세청에서 해당 분기에 실제 통관된 물량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해당업체 담당자분들께서는 부담금내역서 제출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 하셔서 부담금 관련 자료를 작성하신 후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부담금 및 가산금 모두 미납시 이후 제공한 담보 처리 방법은?**

- 담배 제조자 및 수입 판매업자가 전월 분 반출수량과 관련하여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고,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담보물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 (9)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오납금’이란?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실제 판매여부와는 상관없이 담배 반출시에 사전에 반출량만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부담금을 공제 및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오납금’이란 부담금 공제 및 환급 요청금액을 지칭합니다.
-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아래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 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세액의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 따라서 부담금 환급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74페이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지방세 환급 내역,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한 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대한 납부확인증(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를 공문과 함께 보건복지부로 등기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부담금을 반환해드립니다.

**[10] 별지 제13호 서식의 ‘납부담보총액’, ‘미납부산출금액’, ‘납부보증신청액’의 의미는?**

- 납부담보총액 : 금회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제출시에 제공한 담보금액과 금회 납부담보 신청 이전에 제공하였던 담보금액의 합계
- 미납부산출금액 : 금회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한 부담금 금액과 전월 부담금 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부담금 금액의 합계
- 납부보증신청액 : 금회 반출되는 수입물량의 부담금 금액
- 참고사항
  -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납부담보총액’은 ‘미납부산출금액’ + ‘납부보증신청액’의 100분의 110이상 또는 120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100분의 110 또는 120에 해당하는 담보물 제출시)



## <별첨 1> 관련법률

###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16호, 2014.12.2.,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 4의2.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1.28.>
-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1.28.>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8.>
- [본조신설 2006.9.27.]  
[제목개정 2014.1.28.]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 ⑦ 삭제 <2011.6.7.>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 가. 나프틸아민
  - 나. 니켈
  - 다. 벤젠
  - 라. 비닐 크롤라이드
  - 마. 비소
  -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0.>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



---

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3.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

---

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3(국가시험)** ①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010.1.18.>

**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1조(검진결과와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목개정 2002.1.19.]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4.5.20.>

1. 쥘련: 20개비당 354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12.7원
4. 엽쥘련(葉卷煙): 1그램당 36.1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12.7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14.5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9원
8. 물담배: 1그램당 442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225원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전문개정 2002.1.19.]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1. 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전문개정 2002.1.19.]

[시행일 : 2015.1.1.] 제23조

**제23조의2(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들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23조의3(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6.9.27.]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8조(보고·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30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3.18.]

[중전 제31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4.3.18.>]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14.3.18.>
- [제31조에서 이동 <2014.3.18.>]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0.5.27.]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삭제 <1999.2.5.>

---

**부칙** <제12616호, 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문구 및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61호, 2014.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으로 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2.8.]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7조(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본조신설 2007.2.8.]

**제8조** 삭제 <2002.2.25.>



**제9조** 삭제 <2007.2.8.>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삭제 <2011.12.6.>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6.>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삭제 <2011.12.6.>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6., 2014.12.9.>

[시행일 : 2015.1.1.] 제10조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2011.12.6.>

**제12조** 삭제 <2012.12.7.>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 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2.8.>

**제14조** 삭제 <2011.12.6.>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

연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 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본조신설 2012.12.7.]

**제16조의2(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은 담배

②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고문구
  - 가.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 나. 씹는 담배 및 머금은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 다. 물담배: 타르 검출 등 췌관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③ 제1항에 따른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경고문구의 내용 및 표기 위치 등은 담배의 특성과

포장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담배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각각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할 것
2. 담배 광고: 담배 포장지 앞면에 표기한 것과 동일하게 표기할 것

[본조신설 2014.11.20.]

[중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4.11.20.>]

**제16조의3(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4.11.20.>]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

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본조신설 2008.12.31.]

**제18조의4(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9조(국민영양조사시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이하 "영양조사"라 한다)의 시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0조(조사대상)** ①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항목)** ①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건강상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 기타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④식생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6.>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24조** 삭제 <2002.2.25.>

**제25조** 삭제 <2002.2.25.>

**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2.12.30.]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쥘련(卷煙):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쥘련제조기를 이용하여 쥘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4. 엽쥘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5. 각련(刻煙):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쥘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9. 머금은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본조신설 2014.7.28.]

[중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7.28.>]

**제27조의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



---

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③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4.7.28.>]

**제27조의4(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0.9.20.>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4.7.28.>]

**제27조의5(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14.7.28.>]

**제27조의6(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3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개정 2014.7.28.>

[본조신설 2007.2.8.]

[제27조의5에서 이동 <2014.7.28.>]

**제28조** 삭제 <2007.2.8.>

**제29조** 삭제 <2007.2.8.>

**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6., 2014.7.28.>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제31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2.2.25.>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실시
-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7.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확인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8조의 2 및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시행일 : 2015.1.1.] 제32조의3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7.>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

---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12.6.]

**부칙** <제25761호, 2014.11.20.>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21.] [보건복지부령 제267호, 2014.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제2조(실행계획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군·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2007.2.8., 2008.3.3., 2010.3.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군·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2008.3.3., 2010.3.19.>

**제3조(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08.3.3., 2010.3.19.>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

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2.12.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목개정 2012.12.7.]

**제5조** 삭제 <2011.12.8.>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7.29.]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7.]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전문개정 2012.12.7.]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영 제1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 위치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그 밖에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제6조의4(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2.12.7.>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8.]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11.12.8.>]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2.31.]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11.2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

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4.7., 2012.1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6.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08.12.31.]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1. 건강에 관한 지식·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상병유무등 건강상태

③ 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4.25.>

**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제10조(조사시기)**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는 조사연도의 11월에 실시한다.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영 제20조에 따라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0.3.19.>

②영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2조(조사내용)**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건강상태조사 :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앓거나 앓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질병·사고등으로 인한 활동제한의 정도에 관한 사항, 혈압등 신체계측에 관한 사항, 흡연·음주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식품섭취조사 : 식품의 섭취횟수 및 섭취량에 관한 사항, 식품의 재료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식생활조사 : 규칙적인 식사여부에 관한 사항, 식품섭취의 과다여부에 관한 사항, 외식의 횟수에 관한 사항, 2세이하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보충식의 종류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8.11.6.]

**제13조(영양조사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은 건강상태조사원·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하되, 각 조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섭취조사원으로 하여금 식생활조사원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6.>

1. 건강상태조사원 :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2. 식품섭취조사원 :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섭취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3. 식생활조사원 :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생활에 관한 조사사항의 조사·기록

②영양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조사표 작성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집계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조사의 시기·대상·세부내용·결과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7조(영양지도원)**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지도원의 임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기획·분석·평가 및 영양상담
2. 보건소의 영양업무지도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효과측정
5. 홍보 및 영양교육
6.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③시·군·구의 영양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양지도의 계획·분석
2. 지역주민의 영양지도(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인, 환자, 성인의 영양관리) 및 상담
3.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과악 및 급식업무지도
4. 영양조사 및 지역주민의 영양평가실시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홍보 및 영양교육
6. 지역주민의 영양조사결과 자료활용
7. 기타 영양과 식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③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20조(건강검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3.4.]

**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 ①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본조신설 2007.2.8.]

**제21조(지도·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

**제22조(훈련방법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질병관리본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12.27.,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제267호, 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2.8>

<input type="checkbox"/> 담배제조업자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월분) <input type="checkbox"/> 담배수입판매업자				
제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출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인	⑤주소및전화번호			
자 료 제 출 내 용				
가 품 명	㉠수 량 쉐련: 20개비 1갑 기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기준 기타: 1그램 기준	㉡납부금액 (단위: 원)	㉢과오납금 (단위: 원)	㉣부담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에 한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3.19>

(앞 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명 칭 또 는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관리자) 성 명		④ 생 년 월 일			
	⑤주소(주시무소소재지)		(전화 : )			
납부 담보 현황	납부담보총액 ①a	미납부산출금액 ②b	납부보증신청액 ③c	과부족 ④a-(b+c)		
납부담보 보증신청내용						
통관세관명						
구분	⑥품명	⑦규격	⑧수량	⑨판 매 가 격	⑩부담율	⑪부담금
⑫총 수입	계					
⑬부과대상이 되는 담배의 수입	계					
⑭부담금 면제대상 담배	계					
<p>「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확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보건복지부장관 귀하</p>						
구비서류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3.19>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관리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확인(이 확인서에 의한 면허신청 허용량)					
⑥통관세관명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판매가격	⑪부담율	⑫부담금액
계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이 확인서는 확인서에 기재된 통관세관에 제출할 때에만 유효함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주 소 (소재지)				
⑤ 신청 사유					
⑥ 이미 제공한 납부담보의 명세	보증기관		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⑦ 반환받고자하는 납부담보 (현금, 지급보증서 등의 명세)	보증기관				
	보증기간	~	보증금액		
<p>위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반환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장관 귀하</p>					
첨부서류 : 공탁서, 납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변경사유서, 담보제공증빙서류 등 1부					

※ 신청사유 : 반환(당해 담보액의 담보기간내 해당 미납세액 완납 등)



## 5.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12.12.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